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3. 6. 15.

행정재경위원회

|          |     |
|----------|-----|
| 의안<br>번호 | 171 |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6. 1. 이동호 의원 대표발의(14명 발의)

나. 상정의결

-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2023. 6. 15.)  
“수정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대표발의자 이동호 의원 )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구민을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예방접종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여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형평성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내지 안 제4조)
- 지원대상 및 내용, 예방접종 위탁,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내지 안 제8조)
- 접종 및 상환신청, 환수조치, 피해의 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내지

안 제11조)

- 비밀누설 금지,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및 안 제13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법령
- 예산조치 : 논의 필요
- 조례안 예고 : 5일 이상 추진(2023.6.2.~6.12.)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조성수)

-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와 같이 정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예방접종을 추진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며, 제명을 인플루엔자에만 국한하지 않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반에 해당하는 감염병을 예방접종할 때, 지원할 수 있게 기본 구조를 갖추려 하여 제명 등 전반적인 내용을 전부개정한 것이지만,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감염병 이외에 안 제5조(지원대상)에서 인플루엔자와 대상포진 등을 포함시킴
- 안 제6조(지원내용)에서는 인플루엔자와 대상포진 대상자를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설정하였고, 안 제2항제1호에서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제외하고 있는데,
-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자격)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하며, 「주민등록법」 제6조도 외국인은 주민등록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으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 영주권자(F-5)는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의 건강보험 자격취득 대상이자 3년 이상 체류자는 「공직선거법」 제15조 상 유권자이기도 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에 따라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 65세 이상 수급자가 될 가능성은 극히 발생하기 어려운 사례일지라도 조례 구성상 향후 ‘평등의 원칙’ 위반 소지 조례 조문 등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전부개정안  | 수정안   |
|--|---|
| 제6조(지원내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람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br>1.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br>2.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 제6조(지원내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람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br>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 비대상 외국인<br>2.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를 인용하는 이유는 조례안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대상자를 65세 이상 수급자로 한정하고 있기에 타법령 이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만을 인용하는 것이 입법경제상 효율적임.
- 안 제10조(환수조치)는 예산의 불법·부당한 집행을 차단하기 위해 설정한 조문으로 합리적이나, 제2호 중 제5조제2항은 오기표기로 제6조제2항으로 정정해야 할 것임.
- 안 제11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은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보상을 상위법령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타당한 조례안 입안이라고 할 것임. 상위법령에 있는 사항이라도 조례안에 반영하여 주민의 권리를 적극 보장할 것을 강조하는 것은 타당하며, 법률 등의 경우에도 헌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다시 법률에서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임. 또한 이러한 입안은 복잡하고 수많은 법령을 조례안에 담아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 효과를 낼 것임.

□ **비용 관련 사항**을 검토해 보면, 질병관리과는 이번 추경예산안으로 구비 자체 재원 471,135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고가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1인 1회 134,610원을 지원하여 3,500명을 예방접종할 계획임. 따라서 본 조례안에 근거하여 연간 인플루엔자 및 대상포진 등을 예방접종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부서로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대상포진 접종 대상인원 : 3,500명**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수 6,938명(23년 2월말 기준)의 50.4%

- ⇒ - 고가의 접종에 대한 지원 혜택이므로 사업 초기는 접종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함.  
 - '24년부터 매년 800명(65세 도래 대상자 +기존대상자 중 미접종자)을 접종하는 것으로 추계

※ 24년부터 접종 대상자 800명 추계 근거

- 65세로 신규 진입인원을 매년 450명으로 예상( '23년 451명 기준)
- 기존 대상자 중 미접종자의 10%(350명)를 매년 접종대상에 추가

◆ **대상포진 접종비(시행비 + 백신비) : 134,610원**

- **백신비(115,000원)**

- 최근 출시된 고가의 백신인, 싱그릭스를 제외한 백신 두 종류(스카이조스터, 조스터박스)의 백신납품평균 단가 각 8만, 10만
- 일반 의료기관의 대상포진 평균 접종가격(서울기준) : 스카이조스터 146,075원, 조스터박스 166,784원(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시행비(19,610원)**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질병관리청 고시에 따름

□ 본 전부개정조례안 강남구민 중 취약계층 등의 건강한 삶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 의도를 담고 있어 상당히 필요한 조례안이라 할 것임.

○ 다만,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검토와 논의를 통해 수정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 수 정 안

|        |
|--------|
| 관련의안번호 |
| 제 171호 |

제안일자 : 2023.6.15.

제안자 : 행정재경위원장

## 1. 수정이유

일부 상위법과 위반 소지가 있는 조문의 내용을 보완하고 오기를 수정하고자 함

## 2. 주요 수정내용

- 안 제2항제1호에서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제외하고 있는데 평등원칙 위반 소지를 보완(안 제6조)
- 개정과정에서 오기 부분을 수정(안제8조, 안제9조, 안제10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 비대상 외국인

안제8조제1항 중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안제9조제1항 중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안제10조제2호 중 “제5조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전부 개정안   | 수 정 안  |
|--|--|
| <p>제6조(지원내용) ① (생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람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p> <p>1.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u>외국인</u></p> <p>2. (생략)</p> <p>③ (생략)</p> <p>제8조(지원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u>제6조</u>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9조(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 ① <u>제6조</u>에 따른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백신비용과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따라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p> <p>1. (생략)</p> <p>2. <u>제5조제2항</u>에 해당하는 사람이 접종을 받은 경우</p> | <p>제6조(지원내용) ① (현행과 같음)</p> <p>② -----<br/>-----<br/>--.</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 비<br/><u>대상 외국인</u></p> <p>2.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지원절차) ① -----<br/>-----<br/>----- <u>제7조</u> -----<br/>-----.</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 ① <u>제7조</u>-----<br/>-----<br/>-----.</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0조(환수조치) -----<br/>-----<br/>-----.<br/>-----<br/>-----<br/>-----.</p> <p>1. (현행과 같음)</p> <p>2. <u>제6조제2항</u>-----<br/>-----</p>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필수예방접종”이란 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말한다.
2. “예방접종 지원사업”이란 구민을 대상으로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예방접종 비용”이란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의료행위를 한 위탁의료기관에 강남구가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위탁의료기관”이란 강남구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제1항 각호의 질병에 대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
2.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방향 및 절차
3.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4. 그밖에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제2조제1호의 필수예방접종 외에도 질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감염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3.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연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평생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가. 65세 이상 구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람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 비대상 외국인

2.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③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 지원 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된다.

제7조(예방접종의 위탁) ① 구청장은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제7조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제2항에 따

라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9조(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백신비용과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②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

④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심사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따라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
2.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접종을 받은 경우

제11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은 예방접종 피해의 보상에 대한 사항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과 체결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해 체결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동호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71 |
|----------|-----|

발의연월일: 2023. 6. 1.

발 의 자:  
이동호·오온누리·북진경·  
강을석·우종혁·한윤수·김  
민경·김현정·전인수·손민  
기·박다미·이도희·이호귀  
·이성수 의원 (이상14인)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구민을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예방접종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여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형평성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나.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다. 지원대상 및 내용, 예방접종 위탁,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라. 접종 및 상환신청, 환수조치, 피해의 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

조)

마. 비밀누설 금지,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13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필수예방접종”이란 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말한다.
2. “예방접종 지원사업”이란 주민을 대상으로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예방접종 비용”이란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의료행위를 한 위탁의료기관에 강남구가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위탁의료기관”이란 강남구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제1항 각호의 질병에 대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
2.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방향 및 절차
3.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4. 그밖에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제2조제1호의 필수예방접종 외에도 질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감염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3.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연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평생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가. 65세 이상 구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람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2.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③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 지원 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된다.

제7조(예방접종의 위탁) ① 구청장은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제6조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 제9조(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백신비용과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 ②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상환을 신청해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
- ④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심사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따라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
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접종을 받은 경우

제11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은 예방접종 피해의 보상에 대한 사항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

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과 체결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해 체결한 것으로 본다.



